

2025학년도 목원대학교 성인지교육 시행 계획

□ 성인지 교육 시행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의 「별표1」에 의거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은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대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로 명시 되어있음.
- 본교의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6호 성인지 교육 이수자
 - 가.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
 - 나.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 이상
 - 다.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부칙(규정 제21228호, 2021.07.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②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제6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수기준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 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 편입학, 재입학, 복학자에 대한 적용: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교육 계획

1. 교육내용

- ‘성인지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 한다.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이 반영된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은 인정 가능 (교육횟수: 연1회, 1시간 이상)

나.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교육 콘텐츠 및 연구 내용(교육안)을 참고, 활용 가능

2. 교육방식

- 교육횟수: 연 2회 실시(1, 2학기)
- 교육인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원과정 전체 재학생
- 교육시간: 학기당 총 4차시(4시간)을 1회로 인정
- 교육방법: 성인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수한 경우만 1회로 인정
 - 예비 교원 대상 특강 및 대학 지정 원격 콘텐츠 이수(4차시 또는 2+2차시_4시간) 1회 인정

3. 교육기간

- 교육시기: 매년 2회 실시 (1학기: 5월~6월 중 / 2학기: 11월~12월 중)

□ 이수자 관리 및 유의사항

-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 성인지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을 일부 차시로 인정은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 문의처

- 사범대학 교직원지원과 (042-829-7990~1)